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며,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

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임금교섭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을 “임금교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장에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시정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2023년 4월 12일”을 각각 “2025년 4월 12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7,091”을 “7,141”로 하고, 일반직 계 “7,090”을 “7,1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061”을 “7,111”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2023년 4월 12일”을 “2025년 4월 12일”로 한다.

8. 제43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12일)	
총계	31
일반직 계	31
5급 이하	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4항 관련)

1. 노사관행개선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또는 4급 이하	6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3급 또는 4급 이하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노동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임금교섭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 16의3. (생략) 17.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가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시행 18.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 30. (생략) <u><신 설></u>	제11조(노동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임금교섭----- ----- 5. ~ 16의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19. ~ 30. (현행과 같음)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②·③ (생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시정
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

- 로시간정책과를 둔다.
-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 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 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 ⑥ (생략) ⑦ 삭제 ⑧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	제43조(한시정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⑨ ----- ----- ----- ----- 2025년 4월 12일 ----- -----

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⑪ (생략)	-----. ⑩ ----- ----- ----- ----- 2025년 4월 12일 ----- ----- -----. ⑪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091</u>	<u>7,141</u>	+50
·	·	·	
·	·	·	
일반직 계	<u>7,090</u>	<u>7,140</u>	+5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061</u>	<u>7,111</u>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